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산업경제위원회
2000. 9. 25.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0년 7월 28일
- 회부일자 : 2000년 7월 28일

다. 상정 일자

○ 제178회 임시회

-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0. 8. 28) 상정, 질의답변, 유보

○ 제179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0. 9. 25) 상정, 수정동의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김흥기)

가. 제안 이유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 제정시행과 관련, 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 운영됨과 동시에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조례가 새로운 조례의 제정전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폐지되었으나
- 제2단계 구조조정시 자연학습원 운영을 민간위탁사무로 전환하여 민간위탁기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 (안 제1조)
- 시설의 기능을 자연학습과 심신단련, 도민을 위한 교육 등으로 명시하고 운영계획의 수립 등을 의무화 함을 명시 (안 제4조 내지 제5조)

- 연수대상 및 절차를 정함 (안 제6조)

- 연수생에게는 시설사용료 및 연수비를, 자체교육을 위한 시설 사용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토록 함 (안 제10조)

- 관리·운영의 위탁규정을 명시함
 -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항)
 -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3항)
 - 관리·운영의 위탁시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4항)
 - 수탁관리자는 매회계년도 20일전까지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함 (안 제15조)

- 도지사의 수탁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혜영)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여 산림환경연구소의 자연학습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게 됨에 따라 자연학습원의 운영과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수정 및 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 충청북도지사제출
-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
- ◎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신·구문 대조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0. 9. 25

제 출 자 : 권영관 의원

1. 수정이유

- 자연학습원을 수탁할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함

2. 주요 골자

- 관리·운영의 위탁 확대
 -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 공공기관 추가 (안 제12조 제1항)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제1항중 “비영리법인”을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p> <p>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u>비영리법인</u> 또는 청소년단체 등 (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학습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p>	<p>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p> <p>① ----- ----- ----- ----- <u>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u> ----- ----- ----- -----.</p>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수생”이라 함은 학습원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의하여 교육을 받는자를 말한다.
2. “시설사용”이라 함은 학습원에서 자체교육 또는 연수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학습원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학습원은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둔다.

제4조(시설사용) 학습원은 자연학습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는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
2. 청소년 수련활동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
3. 애향·애국심 및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
4. 기타 도민을 위한 교육 등

제5조(운영계획) ①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습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
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
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수신청) ①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자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학생
2. 청소년 단체 회원 및 임직원
3. 일반 직장인 및 사회 단체 임직원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받고자 하는자 및 기관·단체에서는 교육개시 10일전까지 이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연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30명 이상의 연수인원이 중복신청을 한 경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연수시기 등을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④소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연수신청서를 검토하고 연수대상자로 결정 또는 제3항의 중복신청을 조정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에게 조정결과 또는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학습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외래강사수당)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수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계획에 의하여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설사용신청) ① 학습원에서 자연학습, 심신단련,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신청을 한 기관·단체에게는 제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원의 운영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시설사용신청서를 검토하고 시설사용 대상자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사용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 연수 또는 시설사용신청으로 학습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시설 이용자는 “별표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

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학습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학습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학습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도지사는 학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재산의 관리) ①수탁관리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학습원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탁관리자가 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건물을 구조변경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시설변상책임) 연수생, 시설이용자 또는 수탁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시설이나 비품을 파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및 결산) ①수탁관리자는 학습원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2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수탁관리자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취소) ①도지사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학습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2. 학습원의 시설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3.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행정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7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학습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년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연수 및 시설사용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시설 사용료 및 연수비

(단위 : 1인당/원)

구 분		1일	1박2일	비 고 (1박2일 초과시)
숙박동 이	사 용 료	1,000	2,500	1일당 1,500원 추가징수
	연 수 비	500	1,000	1일당 500원 추가징수
야영장 이	사 용 료	300	600	1일당 300원 추가징수
	연 수 비	500	1,000	1일당 500원 추가징수

※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는 사용료만 납부

【별표 2】

단순시설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 용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숙 박 동	1인/1박당	1,500	
강 의 실	1시간당	20,000	
대 강 당	1시간당	30,000	
운 동 장	1일 100명 까지	20,000	초과인원 50명당 10,000원 추가징수
잔디운동장	1일 100명 까지	40,000	초과인원 50명당 10,000원 추가징수
심신수련장	1시간당	10,000	
야 영 장	6~7인용텐트동	2,000	1일당
	50명당	20,000	텐트 미설치 사용단체

※ 1일은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시 시간당 10% 추가징수)

관계법령발취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94. 12. 20>